

## 영림전자공업(주) 무재해 6배 달성탑 받아



영림전자공업(주) 김선용 대표이사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무재해 목표 6배를 달성함에 따라 무재해 6배 달성탑과 달성기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이 김선용 대표이사에게 무재해 6배 달성탑을 수여하였는데, 한해를 보내면서 무재해 달성탑을 받게 된 영림전자공업(주)는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무재해를 달성하여 10배까지 이어간다는 다짐을 하였다.

전자렌지용 고주파 차단 Door Assy를 생산하는 영림전자공업(주)는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95년 12월에 무재해 개시를 한 이후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2002년 8월에 무재해 6배를 달성하고 무재해 10배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 2003년 직원 직무교육 실시



안전협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 1월 6일부터 11일까지 2개조로 나뉘어 제3회 직원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 이홍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협회의 기술수준이 우리 산업사회의 기술수준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안전협회는 기술개발에 전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은 Software 개발과 직원능력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 김석철 산업안전과장은 안전협회는 그 동안 많이 성장하였고, 시민의 의식에 정착되고 있다며 이렇스런 역할을 다하여 우리 나라가 선진수준의 재해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입법예고



〈관련사진〉

노동부는 금년 초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열차의 운행, 입환(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 선로보수 및 점검작업 등 철도 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협착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선로보수 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궤도작업차량 사용시 제한속도를 지정토록 하는 등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19개조항)을 신설 ▲ 중전에는 가솔린이 남

아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설비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안전작업방법·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함(비상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소방기술기준과 일치시킴) 위험물 제조소의 비상구 설치의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험물질 누출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유제(防油堤)설치 의무화, 계단참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과 일치시킴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전기기계·기구 확대 /안전난간의 구조·설치기준 변경 /작업시 장갑착용을 금지하여야 할 협착위험이 있는 기계의 범위 확대 /기타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조치 신설 및 로봇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구체화 ▲ 정련(精練)기, 식품분쇄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신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전기충전식(배터리 차) 차량을 포함시킴으로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구내운반차량 안전조치 의무화 /금수성(禁水性) 물질 및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조치, 전기활선작업요령의 작성 및 준수 의무 신설 ▲ 건설업의 위험작업분야 안전담당자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전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감독자 중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위험작업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함 ▲ 작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안전담당자 지정(17개조), 작업시작전 점검(19개조), 자체검사(10개조) 관련 조항 등이 있다.

### ▶ 내용을 정정합니다.

1월호중 “이달의 안전교실”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p88 “가. 제조를 금지하는 유해물질(영 제29조) 중 ②번 내용에서 (벤지딘 염산염은 제외)를 삭제함.
- p89 “가. 허가대상 유해물질” 중 “(7) 벤지딘 염산염” 삭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는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으로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업재해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차별 해소, 산재장해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등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 면허소지 건설업자 등의 2천만원 미만 공사,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약 7만4천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05. 1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이 적용하게 된다.

또한 산재근로자중에서 요양종결된 1~9급 재해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하거나 1년 이내에 새로이 채용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노동부장관 고시)를 12월간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직장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간 장애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종전 : 여 7급 · 남 12급, 개정 : 남 · 여 7급) 남녀간 흉터장애급여를 동일하게 맞추었고, 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진폐1형)은 종전에 장애급여를 못 받았으나 13급으로 새로이 인정하여 진폐환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간병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 배변을 하지 못하는 자 등을 수시간병 급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노동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 중 적용범위 확대는 전산프로그램 준비, 인력충원 등을 감안하여 '05. 1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직장복귀지원금, 장애보상확대 등은 금년 5월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산재보험에 있어 보험급여 지급시 최고한도가 없어 산재근로자간 평균임금 격차가 현격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평균임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6항에 의거 “2000. 7. 1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급여소득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2. 12. 31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들의 2002년에 적용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 1일 133,070원(적용시기 :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을 초과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1일 평균임금 133,0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

노동부는 기업들의 산재예방시설장비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5%에서 1월부터 4%로 인하한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은 노동부가 안전공단을 통해 기업들이 각종 방호장치·보호구·작업환경개선시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에 투자할 때 장기 처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누구나 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한도는 5억원까지이고 상환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1,3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당부하였다.

## 2003년도 “클린3D 사업” 시행 계획

노동부는 그동안 “클린 3D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클린3D사업이 재해예방과 인력난 해소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부 달라진 2003년도 클린 3D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달라진 내용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 지원대상은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제한('01, '02년도 지원사업장 제외)하고, 그동안 사업수행상의 곤란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가설기자재 임차금 지원사업이 폐지된다. ▲ 지원금액은 최고보조금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자기부담으로 작업장 조명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부족자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보조한다 ▲ 지원항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체부담을 늘리고, 지원품목 중 작업장 조명 및 개인보호구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고 피로예방매트, 높낮이 조절의자 등은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제한하였다. ▲ 유해·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조건을 클린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강화하였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인정서는 계속 수여하되 인정패 수여는 폐지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에서는 ▲ 제조업으로 국한되었던 지원대상을 건설업과 기타 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하였으며, 건강도우미사업을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민간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 사업 중 안전분야는 금속·기계·화학 등 산재취약업종을 집중 지원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작업환경취약 및 뇌·심혈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